

#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

성 북 구  
(환경과)

#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35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22년 9월 13일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기금설치 개요

1) 설치연도 : 2013년

2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6조

3) 설치목적 : 성북구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

※ 재원조성 : 성북나눔발전소 운용수입, 일반회계 전입금, 보조금 등

4) 사업내용
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
-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
-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설치 지원사업

### 나.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1) 기금변경 사유

○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(사업비 잔액정산)

-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
- 지역지원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

## 2)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

### ○ 2021년도 기금 정산 내역

(단위 : 천원)

| ' 20년도말<br>조성액(가) | ' 21년도 증감액    |         |        | ' 21년도말<br>조성액<br>(마)=(가)+(나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계 (나)=(다)-(라) | 조성액(다)  | 사용액(라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9,925            | 40,680        | 118,907 | 78,227 | 90,605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○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| 기정예산    | 변경예산    | 증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기금 총 운용액 | 135,240 | 166,355 | 31,115 |

- 2021년 기정예산 135,240천원에서 166,355천원으로 증액 편성

· 당초 예치금 59,490천원에서 90,605천원으로 증액 편성

## 3)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(안)

### ○ 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| 항 목   | 기정예산(A) | 변경예산(B) | 증감액(B-A) | 증감내용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| 135,240 | 166,355 | 31,115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 입 금 | 56,350  | 56,350  | -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치금회수 | 59,490  | 90,605  | 31,115   | 2021년도 결산에 따른<br>예치금회수 증가 |
| 이자수입  | 700     | 700     | -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수입  | 18,700  | 18,700  | -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| 사업명-편성목 | 기정예산(A) | 변경예산(B) | 증감액(B-A) | 증감내용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| 135,240 | 166,355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용자성사업비 | 56,490  | 56,490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치금     | 78,750  | 109,865 | 31,115   | 2021년도 결산에 따른<br>예치금 증가 |

#### 4) 2022년도 기금 조성(안)

(단위 : 천원)

| 조 성 액   |        | - | 사 용 액             |  | = | 2022년말 조성액<br>(잔액) |
|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166,355 |        |   | 56,490            |  |   | 109,865            |
| 전 입 금   | 56,350 |   | 비용자정사업비    56,490 |  |   | 2023년도 이월(예치금)     |
| 예치금회수   | 90,605 |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|
| 이자수입    | 700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수입    | 18,700 |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관련근거

####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